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3417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341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109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도경민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3. 2. 1.

판결 선고 2023. 5.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109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C은 2014. 7. 26.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채무 합계 700,000,000원을 2014.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C이 2014. 8.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2014.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한 30,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해 달라고 하여 작성일자과 차용인의 인적 사항만이 기재된 서면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제 약속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었을 뿐이고, 그 서면에는 C의 채무액이 700,000,000원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은 피고의 서명을 이용한 변조된 서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피고 서명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이행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이행각서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이행각서 상단부에는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700,000,000원의 채무금을 2014. 8.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타이핑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타이핑된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C이 2014. 8. 30.까지 변제치 못할 때에 본인은 2014. 10. 30.까지 책임지겠습니다'로 된 문구(이하 '피고의 연대보증 문구'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C이 2014. 8.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 본인이 2014. 10. 30.까지 책임지겠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상단부에 기재된 C의 변제 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연대보증 문구는 이 사건 이행각서 말미의 'A 회장 귀하'라는 문구를 피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내용을 알면서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 채무액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¹⁾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경란

판사권혁중

판사 이재영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인 2015. 11. 3.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종전 이율인 연 15%가 적용된다.